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확장된 생산자의 책임, 의무 ”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제1항

개정 전문

생산 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정의 [관련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정의) 제14호]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재활용의무 대상 |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3의 2항

포장재의 종류	제품 및 필름류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포합성수지(EPS) 스티로폼 - 단일복합재질(PVC) - PET병(무색, 유색, 복합재질) -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기타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필름·시트형 및 복합재질) - 윤활유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류 • 타이어 • 윤활유 • 형광등 • 양식용 부자 • 곤포사일리지 • 김발장 • 정수기 필터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산업용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캡 • 세탁소 비닐 • 플라스틱 봉지봉투 • 비닐장갑 • 식품포장 랩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제 2항

개정 전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입증 방법

- 제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9호의2서식] 재활용 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 첨부서류 : ①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 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4]

구분	업종	면제 규모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R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및 판매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b. 연간 포장재 출고량: 4톤 미만 ※ 단, 유리병: 10톤, 발포: 0.8톤 미만 수입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b. 연간 포장재량 : 1톤 미만 ※ 단, 유리병: 3톤, 발포: 0.3톤 미만
필름류 제품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름류 제품5종 제조업 및 수입업자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R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필름류 제품5종 제외) 	면제 기준 없음(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신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3년 신규)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PE)관,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및 판매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b. 연간 제품 출고량: 10톤 미만 수입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b. 연간 제품 수입량 : 3톤 미만 <p>※ ’22~’23년 신규 품목의 면제 규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p>

※ 연간 매출액 : 의무 대상 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법인 총 매출액)

※ 연간 수입액 : 의무 대상 업체의 연간 총 수입금액 (C.I.F가격 기준)으로 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 포함

EPR 제도 절차

전년도	해당년도			다음 년도			
12월 말	1월	2월	1~12월	4. 15	4. 30	7. 31	8. 31
<p>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p>	<p>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p>	<p>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승인</p>	<p>재활용 의무이행</p>	<p>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 제출</p>	<p>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p>	<p>결과보고서 통보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p>	<p>재활용부과금 납부</p>
<p>EPR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 (전년도 12월 말 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 고시</p>	<p>공제조합, 분담금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공단</p>	<p>공단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p>	<p>공제조합, 의무생산자</p>	<p>생산자 → 공단</p>	<p>공제조합, 분담금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공단</p>	<p>재활용의무량 미 달성 공제조합 및 의무생산자</p>	
<p>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 (영 별표5)</p>	<p>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p>	<p>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p>	<p>법 제16조 제1항 법 제29조, 규칙 제13조</p>	<p>영 제22조 제2항 규칙 제14조</p>	<p>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p>	<p>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p>	<p>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 2</p>

재활용 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생산 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여야 한다.

분담금 납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 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대상 품목	공제조합 명
포장재, 필름류 제품5종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윤활유, 윤활유 용기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전지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형광등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타이어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수산물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비료사료포장재, PP마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

출고·수입실적 제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 화면
(<https://www.iepr.or.kr>)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

제출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법 제16조 6항, 규칙 제14조)

-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 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자료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첨부서류 (필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업자는 수입량 증명서류 별지 제5호 서식 및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2.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선택)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예규 별지 제18호
	4.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 제품 포장재로 재사용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① 우리회사 제품 및 상품 현황 자료 취합

- 전체 상품 및 제품 확인 후, 리스트 만들기(ERP자료 활용), 엑셀파일로 작업

② 상품별 제품·포장재 확인 (종류 및 중량 확인)

- ①에서 작성된 리스트에 제품·포장재 종류 및 중량 넣기

③ 2022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 확인

- 매출액 : '22년 결산 완료 후 손익계산서로 확인
※ 결산기준기간이 1. 1. ~ 12. 31.이 아닌 경우 : 부가세표준증명서
- cf.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조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로 확인
- 수입액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수입항도착가격 (C.I.F.) 합계

④ 출고수입실적서 및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작성

- www.iepr.or.kr 시스템 작성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 서식 등

재활용 면제대상 확인서 제출대상

- 제출 대상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법 제16조제2항, 규칙 제13조)
- 일부 품목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출고·수입실적서(제9호의3서식)만 제출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시행령 별표4)
-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자료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벌칙 조항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41조 제1항)
 -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